

평창올림픽 빙상장 건립비 최대 200억 절감

문체부·도·조직위 예산안 확정
예산 절약 관련 논란 증시부
‘시설 안전성 등 우려’ 지적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건립 사업비가 당초보다 150억~200억원 가량 절감될 예정이다.

예산 절감 요구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도, 동계올림픽조직위가 합리적인 절감 방안을 확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도는 문체부가 마련한 실시설계 빙

상 경기장(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II)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 제안된 167건의 절감 방안 중 67건은 반영하고 22건은 동계조직위가 판단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와 도 동계조직위는 용역 결과에 대한 도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도가 받아들이기로 한 67건과 동계조직위가 판단할 22건이 설계변경에 반영되면 총 12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절감액은 설계변경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절감 방안

이 확정된 3개의 빙상경기장과 재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합치면 150억~200억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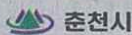
이 같은 절감액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부에서는 ‘무리한 사업비 절감으로 시설 안전성과 사후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승인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사업비 총 11조4,311억원 중 경기장 예산은 6.1%인 6,993억원이다. 이번에 최대 200억원이 절감되면 경기장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낮아진다. 11조4,311억원의 77.5%인 8조8,472억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계획한 SOC사업비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시민과 함께 짓겠습니다”

춘천시 청사 신축 시민 공모



내용 | 공간 구성 등 청사 건립 전반
기간 | 2015. 2. 16 ~ 3. 17
시상 | 금상 300만원 등
문의 | 춘천시공영개발사업소 ☎250-4384

연초 건설업체 수주액 큰 폭 감소

1~2월 수주액 1천억 미만 떨어져

연초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전체 수주 금액은 982억1,700만원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2011년 7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 확정된 이후 1~2월 전체 수주 금액은 2012년 1,171억원, 2013년 1,850억원, 2014년 1,183억원 등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었다.

올해 연초 수주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등 대형공사의 입찰이 마무리된데다 동절기 공사 현장 가동 중지 등으로 발주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위윤기자

지자체-시·도교육청도 다음주부터 300억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안해

지방계약예규 개정 공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 예규)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공포되면 지금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된 지자체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은 지방계약 예규에 맞춰 조정된다. 시·도 교육청 공사는 현재와 같이 지방계약 예규를 준수해 발주된다.

이 같은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가계약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맞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계약 예규는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 배제하고, 100억 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부 운용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해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비교해 행자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혼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지자체-시·도교육청도 300억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안해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 현실화는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2016년 하반기에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1일 새롭게 도입한 표준시장단가(기존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 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하는 제도)에 대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적용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실적공사비를 발표하는 국토부가 실적

공사비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한 상황이지만 지방계약법과 시·도 조례는 여전히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올 7월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형용기자